

보도 사진과 인권

이 글은 일보신문협회에서 바랭하는 「신문연구」 1996년 1월호에 실린
신문사진연구회의 「촬영하기 위해서 배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주

재산적 초상권과 인격적 초상권

초상권은 재산적 초상권과 인격적 초상권으로 나눌 수 있다. 수집된 각 사의 사례에서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이 자기 자신의 모습에 재산적 가치를 둔 재산적 초상권에 관한
사항도 있었다. 그러나, 신문사진의 취재·보도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는 인격적 초상권과
관련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초상권은 법률상 명문화되어 인정된 권리는 아니다. 판례의 축적으로 인지된 사항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판례가 1969년의 최고재판소 판결이다. 데모 행진의 위법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경찰관이 데모대로부터 전치 1주일의 상처를 입자 제기한

공무집행방해상해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최고재판소는 피고측의 초상권 주장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상 자유의 하나로써, 누구도 승낙없이 마음대로 용모나 자태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다」고 판시 했다.

그러나 三浦和義 피고가 사진주간지 「포커스」를 상대로 낸 호송사진사건(93. 11. 24.

동경고법판결)에서는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서도,

「언론과 출판 및 기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정신적 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이어서 최대의 존중을 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표현자유 행사의 행사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표현자유」의 행사라 하더라도 언제나 관대한 판결이 나올 리는 없다. 최근
요코하마(횡행)지법에서 나온 판결은 언론쪽에는 꽤 치명적인 내용이었다.

도쿄의 八尾惠 씨는 지난 88년, 북한의 스파이일까 하는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몇 개 일간지 등을 상대로 요코하마지법에 소송을 냈다. 또, 八尾 씨가 수사당국에 의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 약식기소된 후 석방되었을 때 산케이신문은 얼굴을 감추고
있는 八尾 씨의 모습을 촬영해 지면에 게재했었는데, 八尾 씨는 이때의 보도에서도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또 초상권이 침해됐었다고 산케이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 했다.

법원은 먼저 앞의 소송에 대해 지난 95년 7월 10일 八尾 씨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명예훼손의 성립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인정 했다.

또, 뒤의 소송에 대해서는 같은 날, 먼저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인정하고, 다시 보도
사진에 대해서는, 「그것의 촬영 및 공표가 범죄수사 의 보도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며,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경우라서, 촬영 및 공표의
방법이 앞서 말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하다면 위법성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도, 「촬영을 원고가 승낙했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또 그 내용으로 봐도 누구나 그것의 촬영 및 게재를 요망한 듯한 내용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기사의 내용도 원고가 북한의 공작원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한다면 그와 같은 기사에의 사진 게재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위법성은 제한될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원고에게 피고는 110 만엔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부언하면, 별도의 소송에서 동일한 현장사진에 대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이 경우를 봐도 용의자의 얼굴사진 게재가 모두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는 물론 말할 수 없다.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이지만, 한 신문사에서 사진기자를 상대로 초상권 일반에 관해 강의한 변호사는, 「초상권의 전문가는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기자이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매일같이 구체적인 사안에 직면해 가며 판단하고 촬영하는 사진기자가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장의 순간적인 판단이 좋다는 말로 사진기자들은 용기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그때 그때 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된다.

초상권을 다룬 이번 연구회에서는 법률논의가 아닌 현실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가, 현장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가, 인권을 배려하면서도 보도의 기본을 소홀함이 없이 취재하기 위한 경계선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했다.

초상권과 보도사진과의 관계를 대략 다섯 가지로 나눠봤다.

첫째는 재해 · 사건 · 사고의 사진취재. 최근의 예로서는 고베 대지진과 도쿄의 코스모신용조합 파산이나 교통사고 등 어떤 형태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취재하는 경우.

둘째, 범죄보도에서의 용의자 체포 등.

셋째, 입시 등 일반뉴스의 사진취재.

넷째, 스냅이나 기획취재 등.

다섯째, 사진의 2 차 사용.

사건 · 사고 · 범죄의 취재

첫째와 둘째의 경우는 미리 예측할 수 없어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사진촬영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많지 많았다.

하지만, 고베 대지진을 취재한 사진기자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어 좋겠는가』라는 의문을 지적하듯이, 찍는 쪽의 자세로 변화되고 있는 점을 포함해 문제점이 논의됐다.

최근에 코스모신용조합에 해약을 요구하는 예금자가 쇠도한 날, 직원과 여성투자자들이 뒤엉켜서 싸우는 정경을 촬영해 게재하자, 여성들이 이의를 제기해 사과한 경우가 있다. 이 신문사에서는 사진부 내에서 논의한 결과, 이 정도가 문제된다면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지만, 당사자라면 또 무시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 물론 있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뉴스를 사진으로 전하는 상황이 『사회일반의 정당한 관심에 부응하는가 또 그것이 필요한 사항인가 아닌가』라는 판단이야말로 바로 신문보도 사진 게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인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두번째의 범죄보도에 대해서는 먼저 옴진리교 사건이 하나의 예가 된다.

간부들이 경미한 죄로 체포됐는데 연행사진을 게재할까 말까하는 문제가 각 사 모두 사내에서 논의가 되었다. 호외에서 게재하고 석간은 삭제한 경우, 도쿄와 오사카에서 취급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갖가지 총기가 발견되고 교단이 범죄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는 등, 사건의 특이성이 잇달아 터졌다.

특히 사린사건에서는 제 2, 제 3의 위험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각사 모두 경미한 죄라 하더라도 연행사진의 게재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또, 경찰도 용의자의 촬영을 묵인한 점도 있어, 매체들이 사진취재에서 이런 상황을 활용한 측면도 있다.

한편, 마쓰모토 살인사건에서 죄누명을 썼던 河野義行 씨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 문패가 보이는 그의 집 사진을 너무 쉽게 게재했다는 반성도 있었다. 누명부분에 대해서는 사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뉴스의 흐름에 사진도 쉽게 동조해 버렸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부분의 사진기자들은 옴진리교의 일반신자나 대지전의 피해자에 대해 취재윤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촬영에 임한다. 하지만, TV 와이드쇼 기자들이 같은 현장에서 과격하게 취재하는 와중에 경쟁이 점점 격화되어 윤리를 벗어난 취재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행사진에 대해 명확한 게재기준을 설정해 놓은 언론사는 연구회 구성원 중에는 없다. 사내의 사건보도소위원회가 보도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아사히신문에서는 중대한 경제 사범이나 정치범, 공인들에 대해서는 연행시 수갑이나 포승줄까지 나오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데스크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경우는 젊은 여자 2명이 소녀를 유괴한 사건으로, 젊은 여자라는 이유로 연행 사진의 게재를 어떤 신문사의 정리부가 거부했다. 이 유괴사건에서는 용의자의 얼굴사진이 중 학생 때의 것이었기 때문에 게재하지 않은 신문사도 있었다. 가맹사에 이 얼굴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던 교토 통신에 2개 가맹사로부터 항의가 있었다.

유괴됐던 소녀가 무사히 풀려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게재의 판단이 신문마다 달랐지만, 흉악한 사건이었다면 어떤 얼굴사진이라도 실렸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게재 기준을 분명히 정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판단이 보도의 자유를 지키는 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다

외신사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해

범죄 보도와 관련해서는 외신의 문제도 제기됐다. 일례로 든 것이 하와이에서 발생한 藤田小女姫 씨 살해사건의 재판사진으로 각 사 대부분이 법정내에서의 피고와 피고의 모친 얼굴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모친의 얼굴까지 게재하는 것은 타당했을까.

정보 무국경화의 시대에서 일본의 사진이건 외국의 사진이건 간에 판단의 기준은 본래 다르지 않을 터이지만, 외국통신사 사진의 경우 기준을 비교적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통신사 측의 윤리관이나 잔학성에 대한 수용태도가, 일본과 다르다는 지적은 있지만, 외국 것이라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게재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라는 속셈인지도 모른다.

소말리아에서 미군병사의 목없는 시체를 질질 끌고 있는 외신사진이 게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처음은 망설였지만, 국제적인 상을 받았을 때는 박스를 쳐서 송신했었다」(교도통신)는 예도 소개됐다.

일본에서는 통상 사건 사고를 보도할 때 상당히 비참한 현장사진은 게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에 관해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사진 등 꽤 험한 사진도 게재됐다. 게다가 과거의 전쟁에 머물지 않고, 현재 세계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나 전쟁의 비참한 사진도 게재되는 예가 많다. 이에 대해 비참하기로 말하면 전쟁이나 일반 사건사고나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문제에 대해 오피서버로 연구회에 출석한 權田萬治 교수(전수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에서는 범죄보도나 사고보도 따위에서 일본이라면 절대 게재되지 못할 사진이 게재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법정의 TV 중계나 사진 촬영도 주(주) 차원에서는 많은 곳에서 인정된다. O. J. 심슨 재판에서는 TV 중계와 사진취재의 과잉보도에 대해 미국 언론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는데, 오히려 일본은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한다. 영국에서도 미국에 자극 받아 좀더 자유로워도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가혹스러운 사진류들은 일본에서 한때 수입금지품으로써 규제대상이 됐던 때도 있었는데, 베트남전쟁 때 위성중계로 직접영상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전쟁의 참화를 리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사진들은 게재하는 것이 어떠냐는 견해도 있었다.

시체사진이나 가혹사진들은 각기 국가의 문화 차이에 따라 취급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당히 대범한 미국에서조차도 1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한 신문이 익사한 아이의 시체 앞에서 가족이 슬퍼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자, 항의하는 전화와 편지가 9백통이나 쇄도했고 80명이 구독을 취소했으며 신문사를 폭파하겠다는 전화까지 걸려온 사실도 있다.

미국에서도 일상생활중에 사고로 발생한 시체 사진이나 가혹사진 따위는 게재하지 않는 언론사가 많다. 단지, 전쟁의 경우는 비참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과감하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신에 대해서도 게재 기준은 단순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또 정하지 않는 것이 취재의 자유나 보도의 자유, 알권리를 지키기에는 쉽다. 하지만, 외국뉴스의 게재빈도는 앞으로 더욱 높아져 갈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본방침은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일반뉴스의 사진게재

최근 각 신문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취직설명회 관련 보도사진이다. 얼굴이 나와 곤란하다는 것이다. 지난 93년 3월 30일 도쿄도청이 처음으로 주최한 중도채용시험 설명회에서 참가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확실히 알아볼 수 없도록 촬영해달라」는 주최측의 사전요구가 있었다. 한 개 신문사만이 정면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재해 항의를 받았다.

최근 입학시험이나 취직설명회 등 주최자측이 촬영에 대해 사전에 규제를 신청해오는 경우가 많다. 사진취재를 둘러싼 새로운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인권배려의 차원이겠지만, 주최자측에서는 요망서를 내기만 하면 면책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먼 거리의 모습 등 사진위치를 미리 설정해 놓고 있는데도 적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은

안된다」와 같이 보도쪽의 알릴 의무를 중요시하며, 그 때문에 보도의 자유라는 입장을 좀더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공공장소 내에서의 취재허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재사진이 타당하지 못하다며 항의해 오는 일도 있다. 동경증권거래소에서 딜러가 빈둥거리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자, 즉각 항의가 들어온 예가 그것이다.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거래가 한산한 장면의 취재라서 이러한 분위기가 적히면 곤란하다」 등 지적이 분분했다.

또 한가지의 사례에서 일반뉴스의 사진취재에 대해 고찰해보자.

참의원선거에서 가두연설을 뜨개질을 하면서 듣고 있는 한 여성유권자를 촬영해 「한물간 선거」라는 제목을 붙여 게재하자, 「나는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뭘 말이나」라는 항의가 본인으로부터 왔다. 제목에 따라서는 사진내 의미사항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신문사내 취재부와 편집부와의 견해 차이도 무시 못해 사진에 대한 사내의 인식통일이 필요한 때도 있다.

權田 교수는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제목의 취급차이는 고정관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연휴 뒤의 사진이라며 역에서 하품을 하고 있는 셸러리맨의 모습이 많았다. 어떤 때는 피사체가 된 사람으로부터 실은 모친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노라는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 처음부터 정해진 사진을 찍는 것은 진실에 쫓긴다. 사진도 제목도 항시 고정관념을 깨는 자세에서 신선한 것 이 생겨날 것이다」.

제목은 촬영자가 아닌 데스크가 다는 예가 많다. 이 때문에 상투적인 말이 나오기 쉽고, 오히려 사진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촬영에도 처음부터 어떤 모습에 끼워 맞추는 때가 있다. 이런 방법은 달리 지양돼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크다.

제목도 커다란 정보란 인식이 사진부 뿐만 아니라 신문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착되면, 짧지만 정확한 기사로서의 정보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인격적 초상권의 문제

네번째는 스냅취재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왜 내 사진을 함부로 찍어 실었느냐」하는 부류의 항의에 대한 대응이 제일 까다롭다는 소리가 높다. 인격적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논의된 사례는 더운 날의 한 스냅사진. 우에노 동물원으로 향하는 가족동반의 모습을 가족단란의 풍경이라며 전면사진으로 게재하자, 사진 찍힌 아버지가 자기가 하는 일이 야바위장사라서 얼굴이 많이 팔렸다면 앞으로는 「애들에게 위엄을 부릴 수 없게 됐다」고 항의해 온 경우다. 담당자가 2 번이나 만나 설명 했지만 납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것 이다.

법률적으로는 「목시의 승낙」이란 용어가 있다. 보도사진의 취재에는 취재자가 완장을 차고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이를 피사체가 일부러 거부하지 않았다면, 묵인한 것으로 본다 해석이다.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한다면 사생활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법률론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일이 있다. 사진부로서는 재삼 사죄나

설명을 했음에도 양해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성의를 다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항의가 있다 해도 사진기자는 「위촉」되는 일이 결코 없다. 문제는 항의에 따르는 「금전 요구」다. 소송에까지 가지 않는 인격적 초상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촬영·게재료」와 같은 것을 뒤로 요구해 오는 것이다. 하지만, 달리 해결하고는 싶지만 「보도를 위해 찍었다」는 설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며, 금전에 의한 해결은 안된다는 견해가 당연한 것이다.

權田 교수는 「미국의 언론사정에 밝은 吉村卓也 씨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스냅사진이라도 게재사진에 피사체의 이름을 삽입한다. 그리하면 신원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게재허가를 얻은 사안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된다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일반인에게 이름을 알아내는 것은 아직 저항이 강해 오히려 사친취재가 안될 염려가 있을 것이다.

옛날 판례이지만, 동경의 한 온천에서 흑인 재즈가수를 완장을 차고 촬영한 뒤 잡지에 게재하자, 그 옆에 있다 사진에 함께 찍힌 남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법원은 목시의 허락이 있었다며 매체측에 승소를 내렸다. 이 판결에는 허락의 해석이 지나치게 안이했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일본의 풍토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인권에 대한 배려는 대전제이지만, 취재에는 갖가지 장면이 있어 하나하나 양해를 얻자면 무리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문사로서는 보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에 대한 기본 지침을 지켜 말썽이 있더라도 보도할 것은 보도하고 나아가서는 전사가 사진부를 도와주는 사내 체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오래전에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를 뉴욕타임스가 폭로해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 문서의 보도에는 고문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젊은 변호사가 발표를 주장해 신문사의 최고간부도 이에 따랐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 유차도 견해가 다른 일이 있는 것이다. 말썽을 피하는 데는 당연하다 할지라도, 너무 과잉하게 반응하면 취재가능한 영역을 축소할 염려가 있다는 말이다.

초상권이 정면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다섯번째로 분류한 사진의 사용이다. 보도용으로 찍은 사진이라도 보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재산적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이 경우 사진부가 무마할 수 없는 사항도 적지 않다.

사진의 2차비용과 재산적 초상권

체육부로부터 요구가 있어 스모사진을 한장 빼서 건네주었더니 광고로 사용해 일본스모협회로부터 항의가 제기된 사례가 있다. 재산적 초상권의 침해인 이 경우도 신문사내의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극히 최근까지 자사에서 촬영한 사진이므로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떠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소리도 있다. 인기선수를 많이 보유한 자이언트구단과의 관계가 깊은 요미우리 신문사조차도 「우리 팀인데 사진을 쓰면 뭐가 나쁘냐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 겨우 인식이 바뀌었다」고 한다.

광고는 논외이지만, 스포츠계의 재산적 초상권에 대한 자세는 엄하다 최근 이런 경향의 단체로서 J리구나 일본 스모협회, 일부 구단과 JOC 등의 이름이 거명되지만, 「J리구가 테이프를 끊었다」라는 지적도 있다.

통신사의 경우, 전송한 사진에 촬영자의 의도와는 다른 제목이 붙는다면 의미도 사진의 인상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정보가 잘못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소장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시간의 경과나 제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거나 사진정보 자체가 바뀌어 버리고 마는 때도 있다. 덧붙이는 물건같은 「덧사진」이나 사진위에 소용돌이 모양을 붙여 사용하는 「소용돌이 사진」을 쓰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말썽은 적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사진밑에 「본문과 관계 없음」이라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래서 소장사진은 될 수 있으면 쓰지말자는 방침을 정한 신문사도 있다.

2차사용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사진을 일반에게 판매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서비스가 「마구잡이식 운영에 가깝다」란 지적이 있다. 사진부로서의 위기감은 각사 모두 상당히 깊다. 사진의 저작권·관리권의 소재를 분명히 정리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나 출판물의 전산화 확산 등에 따라 앞으로는 더욱 더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하다.

포토라이브러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취재시 피사체의 양해범위가 문제이다. 신문·통신사가 촬영하자고 하면, 그 사람은 취재에 응하면서도 아마 한번만의 게재를 생각할 것이다. 한데, 이 사진이 보관된 후 서비스로 팔린다는 사실을 안다면 양해해 줄 것인가.

사진은 인권과 사생활 그 자체이며, 특히 초상권에 대해서는 서비스부문이 한층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인물사진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인터뷰취재로 촬영한 것이 포토서비스로 팔려 스캔들 기사에 사용되지 않는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때는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 통신사에서는 인물사진을 지방지가 요구해 올 때 보내주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단지 상세하게 챙기지도 않으며, 지금까지는 아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경우 어찌할까, 불안한 사안인 것이다.

다양한 대처가 요구되는 사진취재

이처럼 초상권을 둘러싼 고충처리의 창구는 사진부로 되어 있는 신문사가 많아, 「법무담당실은 재판으로 가면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이니치신문), 「먼저 독자상담실에서 대응하고, 거기서 사진부로 온다」 (요미우리신문)는 곳도 있다. 「사진을 찍는 것이 본업. 말썽을 하나 둘 처리 못하면 어찌할 것인가, 걱정은 되지만 적당한 비판을 잘 구별해야 한다」 (아사히신문)는 각오도 있다.

항의가 일상적인 사항이 될 정도로 늘어났지만, 요즘처럼 많은 양의 사진이 게재되면서도 실제로 재판정에까지 가는 경우는 적은 것이다. 사진부가 그 정도로 인권에 배려하고 있다는 결과인지도 모른다.

취재대상 측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한편으로 영상시대에서 보도사진의 사명은 다시금 중요시되고 있다. 무국경화, 전자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진취재는 일층 더한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찍는 측과 찍히는 측의 마찰도 질과 양 모두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 모순의 하나가 신문사진이 안고 있는 변혁의 주제인 것이다.